

국일제지, 신호제지 인수 “청신호”

서부지방법원, 신한은행 의결권 행사 가능 ... 아람FSI 지분도 행사

법원이 아람구조조정조합과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각각 제기한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일제지 손을 들어주어 주목된다.

국일제지는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이 낸 신한은행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고 12월9일 발표했다.

또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아람FSI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해 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12월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한은행이 보유한 11.8%의 주식과 아람FSI가 보유한 13.5%의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람구조조정조합에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돼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2.2%의 조합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임시주총에서 55%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호제지 관계자는 “7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이 우호적이어서 임시주총을 통해 추가 선임되는 6명의 이사 가운데 3명 이상을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로 임시주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호제지 측에서 3명의 이사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11월14일 신호제지의 적대세력인 국일제지의 요청으로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아람FSI로부터 273만주(11.8%)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신호제지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아람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은 아람FSI가 임의로 신한은행에 지분을 팔았으며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아람FSI의 이충식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아람구조조정조합은 또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신한은행에 팔고 남은 조합 지분 2.2%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람FSI 대신 조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며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엄정욱 부회장 역시 아람FSI가 보유하고 있는 13%의 주식 중 8%는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람FSI 대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내 2위의 제지기업인 신호제지는 8월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참여를 위해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FSI로부터 19.81%의 지분을 인수한 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신호제지는 12월13일 이사 6명 추가선임과 이순국 이사 해임안 등 2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2/12>